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인적분할합병에 따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순자산) 감소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함

1. 개요[1]

B회사와 C회사는 2021. 3. 19. B회사의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C회사에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시자료에 제시된 조정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보면, 분할 이전 B회사의 순자산(=자기자본) 약 1조 5,224억 원을 투자사업 부문의 순자산 약 1조 497억 원과 나머지 부문 약 4,727억 원으로 나누어서 투자사업부문의 순자산(자산과 부채)을 분할합병 방식으로 C회사에 포괄승계시키겠다는 계약입니다. B회사는 투자사업 부분의 순자산에 대응하는 주식을 소각하고 B회사의 주주는 B주식의 일부를 소각 당하면서 C주식을 받는 것입니다. 소각 당할 B주식의 가치는, 순자산 약 1조 5,224억 원 중 C회사로 넘어가는 1조 497억 원만큼, 즉, 분할 전 B주식의 가치 가운데 68.95%(=10,497/15,224)로 추정되었습니다. 분할 전 B주식으로 치자면 0.6895주에 해당하는 소각대상 주식의 시가는 투자사업 부문의 순자산과 장차 낳을 수익을 가중평균해서 7,803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편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C주식의 주당 가치는 11,400원이었으므로 B주식 0.6895주가 받을 C주식의 수는 7,803/11,400 = 0.6845주로 추정하고, 분할 전 B주식 1주가 받을 C주식의 수를 (0.6895 x 0.6845) = 0.4720주로 정했습니다. 법령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사건 판결은 10,497/15,224 = 0.6895를 분할비율이라 부르고, 0.6895 x 7,803/11,400 = 0.4720을 분할합병비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2021년 6월 B회사 주식 217,312주를 약 33억 4,700만 원에 매수했다가 B회사의 감자로 주식 보유수량이 약 149,837주 상당 감소하면서 C주식 102,569주(주당 11,400원 x 102,569주 = 약 11억 6,929만 원)와 단주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소각 당한 B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가입니다. 원고 주장은 합병계약 당시의 비율을 적용하여 B주식 취득가액은 33.47억 원 x 10,497억/15,224억 = 33.47 x 0.6895 = 약 23.08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과세관청 주장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실제 순자산의 비율인 0.60878을 적용하여 33.47억 원 x 0.60878 = 약 20.37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20.37억 원은 C회사가 의제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적용한 취득가액이었기에 원고는 원천징수 당한 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과세관청에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구 소득세법[2] 제17조 제2항 제6호는 분할대가에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액을 산정하도

록 하면서도, 기존 주식의 취득가액을 존속 부분과 분할 부분에 안분하는 구체적인 산식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주식의 총 취득금액에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이 분할 전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적분할에서는 분할법인의 순자산이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으로 이전되고 그 대가로 주주에게 신주가 교부되므로, 신주의 가치에는 이전되는 순자산의 가치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신주에 대응하는 기존 주식의 취득가액도 실제 이전되는 순자산의 비율, 곧 등기일 현재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등기로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이 사건 신주의 취득·평가 시점도 등기일이므로, 취득가액 안분을 위한 비율 역시 같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분할비율은 통상 순자산비율을 기초로 정해지지만, 법률상 반드시 실제 이전되는 순자산의 비율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산정일과 등기일 사이에 순자산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분할비율보다 등기일 현재 실제 감소한 순자산의 비율이 실제 이전되는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비율 0.60878을 적용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산식을 개인주주에게 유추적용하는 셈이니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분할제도의 법적 성격에서 산정기준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세관청이 공시된 분할비율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하였습니다.

3. 시사점

우선 법에는 분할 시의 의제배당이나 합병 시의 의제배당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분할합병에 관한 조문은 따로 없습니다. 대법원은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분할합병을 분할과 합병이라는 두 거래로 나누어서 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분할 시에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주주의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이상 합병 시에는 개념상 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이미 시가로 올라가서 합병대가와 같아져 의제배당이 생길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분할대가에서 뺄 분할회사 기존주식의 취득가액입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소각되는 주식이 없다면 즉 분할 이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 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분할대가로 받는 금액이 전액 그대로 배당소득으로 의제됩니다.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분할회사의 자본금이나 발행주식 수가 그만큼 당연히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분할회사는 순자산 감소액만큼 잉여금(법정준비금이나 배당가능이익)만 줄이고 자본금 및 발행주식 수는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소각 없이 자본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주주가 받는 분할신주는 그 시가 그대로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분할회사가 주식 일부를 소각하는 경우 사라지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기존 주식 취득가액의 일부를 안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이 사건 판결입니다.

신주 배정 수량을 정하는 회사법상·거래상 분할비율과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 안분비율은 목적과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 공시된 분할비율이 세무 계산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시는 그 자체야 당연 맞습니다.

합병이나 분할에 따르는 의제배당 원천징수세는 실무적으로 곤란한 문제를 낳는 수가 많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각 주주의 취득원가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 각 주주의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증권회사를 통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있지만 대규모 상장회사라면 엄청난 업무부담이 생기고 아예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합병 분할 시에 세금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이 후속작업에 드는 시간, 노력, 자금부담입니다.

[1]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6두31230 판결.

[2] 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구성원

백제흠
대표변호사

02-316-4052
jhebaik@shinkim.com

도훈태
변호사

02-316-4090
htdoh@shinkim.com

윤진규
변호사

02-316-1614
jkyoon@shinkim.com

윤준석
변호사

02-316-7212
jseyoon@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